

의안번호	2218685
의 퇴 인	송재봉 의원
회 답 일	2026. 8. 12.
추계번호	26A2463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조(과징금)	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·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 다만,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(着色劑)·식별제(識別劑)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·판매한 경우 또는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4조(과징금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“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”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게 되면 과징금 수입이 감소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에 따르면,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·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경우 등 법 위반이 있을 때¹⁾ 산업통

1)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4조(과징금) ① 산업통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·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상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(법 제14조제1항 본문)

- 이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(着色劑)·식별제(識別劑)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·판매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신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(법 제14조제1항 단서)

- 개정안은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사유로 “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”를 추가함

□ 개정안에 따른 비용(과징금 수입 감소)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석유판매업자 등이 “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”로서 과징금이 부과된 건수와 과징금 규모를 파악하여야 하나,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산업통상부가 법 제14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없었으며, 과징금 부과는 2025년 기준으로 6건(1억 5,200만원) 수준임
- 주유소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, 과징금 부과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산업통상부는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

[표 1] 법 제14조에 근거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현황(산업통상부)

(단위: 건, 백만원)

구분		2021	2022	2023	2024	2025
사업정지		—	—	—	—	—
과징금	부과 건	1	—	2	1	6
	부과금액	7	—	1,002	4	152

자료: 산업통상부

다만,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(着色劑)·식별제(識別劑)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·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2호의2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석유수출입업자가 제1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2의2.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
3.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4항제2호·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